

이사회규정 개정 사전예고

1. 개정 이유

소액 기부사업에 대한 기부금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 대상이 되는 기부금 출연금액 기준*을 상향하고자 이사회규정 제8조에 의거 제안함

* (현재) 천만원 초과 출자·출연 → (변경) 기부금 출연은 오천만원 초과

2. 주요 개정 내용

「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」에 의한 기부금은 오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함 (안 제8조제1항제3호카목)

3. 의견제출

이 제·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개인은 2022년 3월 22일까지 (도착기준)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 기획조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
나. 제출자의 성명(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
<보내실 곳>

- 주소 :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8층 기획조정실
- 담당자(이메일) : psh0111@khug.or.kr
- 전화번호 : 051-955-5634
- 팩스번호 : 051-955-5306

4. 예고기간 단축사유

신속한 규정 개정을 통한 효율적 기부금 집행

첨부 이사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.

이사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제8조(의결 및 보고사항) ① 이사회는 공사 업무의 중요 사항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1. ~ 2. (생략) 3.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가. ~ 차. (생략) 카.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출자·출연. 다만,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업체에 대한 출자 전환은 제외한다. 타. ~ 서. (생략) 4. ~ 5. (생략)	제8조(의결 및 보고사항) ① ----- ----- -----.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가. ~ 차. (현행과 같음) 카. 천만원(<u>기부금품의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부금은 오천만원</u>)을 초과하는 금액의 출자·출연. 다만,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업체에 대한 출자 전환은 제외한다. 타. ~ 서. (현행과 같음) 4. ~ 5. (현행과 같음)	소액 기부금의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액기준 상향
	부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일부터 시행한다.	